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번 호	243

제출년월 : 2024년 2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2024.6.30.) 및 수탁 반납의사 표명에 따라 월곡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 고(前 위탁현황)
		대지	건물		
월곡종합 사회복지관	오패산로16길 23(하월곡동)	1,274	2,015 지하1/지상4	2005.3.2	사회복지법인 혜명 (위탁기간 2019.7.1~2024.6.30)

나. 위탁기간 : 2024.7.1. ~ 2029.6.30.(5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 원칙

※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